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장종태 · 박선원
이병진 · 박홍배 · 차지호
부승찬 · 이정문 · 안도걸
서미화 · 복기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.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,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,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,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, 임기 중

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,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,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정년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0조(정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또</u> <u>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제1</u> <u>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</u> <u>지 아니한다.</u>